

자동차검사 실무 Q&A 사례집

2020.11



매뉴얼 활용 관련 안내

본 매뉴얼은 2020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이용 시점에 따라 관계 법령의 내용과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일부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시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매뉴얼을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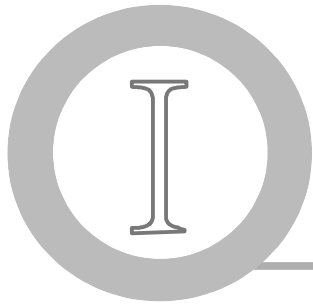
제 1 장 자동차검사 일반	1
------------------------	---

제 2 장 등화장치	22
--------------------	----

제 3 장 배출가스 검사	36
-----------------------	----

제 4 장 튜닝 관련 사항	45
------------------------	----

제 5 장 기타	59
------------------	----



자동차검사 일반

제1장

일반사항

Q1-1.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된 자동차가 재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검사 적용 방법은?

A 종합검사란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검사로서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검사 부적합 이후, 해당 자동차가 정기검사 지역으로 이전등록 하였더라도 종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종합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완전부적합 처리하고 정기검사로 접수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가 종합검사 지역으로 이전등록 한 경우에는 완전부적합 처리한 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정밀검사 유효기간 생성 필요)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5] 비고 8.

Q1-2. 여객사업용 자동차가 휴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 도달한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

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서 정하는 차령 연장에 대한 항목에서는 휴업신고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차령 연장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Q1-3. 지방세 체납 등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가 검사유효기간에 도달한 경우에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정기검사, 종합검사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한 후 임시운행하여 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Q1-4. 정기 또는 종합검사의 검사유효기간에 도달하지 않은 자동차가 사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A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마지막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사전검사 접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사전검사는 마지막검사일 9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Q1-5. 1부 검사자에 고전원전기장치 교육을 미 이수한 검사원을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한 검사원을 2부 검사자로 등록한 경우에 고전원전기자동차 검사가 가능한지?

A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는 1부(관능 및 기능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전원전기자동차의 검사 시에는 고전원전기장치 교육을 이수한 검사원이 1부검사자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및 별표18

Q1-6. 피견인 자동차(트레일러 등)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한지?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피견인자동차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시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Q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령이 만료된 자동차가 임시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임시검사는 차령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차령이 만료된 자동차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 수검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Q1-8. 공단에서 전담하여 검사하고 있는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업무범위를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종합검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제2장

재검사 관련

Q2-1. 부적합 자동차의 재검사 과정에서 최초 검사 시 부적합 처리한 항목외의 다른 부적합 사항 또는 시정권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적합 자동차의 재검사 시에는 **부적합 판정된 항목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판정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Q2-2. 재검사에서 주행거리 입력 시 최초 검사의 주행거리를 재검사 시에 입력해도 되는지?

- A 중고거래차 거리 시 주행거리계의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건설교통부) 지시(2001.9.10.)에 따라 자동차검사 시 통산 주행거리를 기재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갑)에 기록되는 주행거리는 부적합 자동차의 경우 최종 합격 처리 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행거리 입력 취지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 시 **재검사 당시의 주행거리를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2-3. 주차 제동력 기준 미달로 부적합된 자동차의 재검사 시 제동력 검사 항목 중 주차 제동력만 검사가 가능한지?

A 주차 브레이크 부적합에 따른 정비 시에 주차케이블 외의 제동장치를 정비하는 사례, 주차브레이크 케이블 조정으로 후 브레이크의 복원력 불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브레이크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해 차량중량의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축의 제동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Q2-4. 재검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를 차주의 요청에 따라 완불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서 재검사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업무지시(2014.6.13.)에서 재검사를 받기 위해서 원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본래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검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재검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의 완전 부적합처리를 허용하고 있어, **완전 부적합 처리는 요청 사유가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한 검사소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다른 검사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완불처리를 요청하는 것과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완전부적합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합니다.

제3장

검사 판정 방법

Q3-1.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 부위에 용접을 한 흔적이 있을 때
검사결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검사 시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가 변형 또는 손상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용접으로 인하여 변형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부적합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Q3-2. 차량 루프의 프레임을 절단하여 선루프 길이를 연장하였을
경우에 부적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A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선루프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분류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루프를 차실 천정의 맨 앞, 중간 및 뒤쪽의 가로 프레임(기본골격)이 유지된 상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는 경우, 자기인증된 자동차에 설치된 파노라마 선루프를 설치한 경우(가로 프레임 제거 가능)에는 부적합 판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3. 벤 차량의 격벽을 개조하여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 검사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제2호에서 벤형 화물자동차의 격벽에 대한 재질과 강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격벽으로 임의개조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하대제원이 변동될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더불어 물품적재장치의 임의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대상에 해당하므로 물품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4호에서 정하는 부적합 판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Q3-4. 소음기 끝 배기관 길이를 증가시킨 자동차의 검사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A 소음기 이후의 배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배기관의 개구방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차체의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부적합 판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Q3-5.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과 같은 조향장치에서 파워오일이 누유되는 경우 부적합 대상인데, 미세하게 누유되는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3호에서는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을 부적합 판정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누유 또는 누유흔적의 경우에는 시정권고로 판정하면 됩니다.**

Q3-6. 기존 경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에어 경음기를 장착한 경우와 기존 경음기를 탈거하고 에어 경음기를 장착한 경우 모두 시정권고 가능한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검사 시 경음기의 음색 및 경적음 크기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적음의 크기가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음기에 추가로 에어경음기를 설치한 경우에 **경적음 크기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 대상이며,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음기 추가설치로 시정권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 경음기를 탈거하고 에어경음기를 장착한 경우에도 경적음 크기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 대상입니다. 아울러, 경음기 음색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권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Q3-7. 수입자동차 중 일부는 순정임에도 불구하고 배기관 끝부분이 차체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검사 판정 방법은?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배기구의 기준에서는 배기관의 끝이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2018년 12월 31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제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원 이내로 설치되어 있으며, 임의변경되지 않았다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소음기를 튜닝하려는 자동차는 2015년 1월 22일 이후부터는 튜닝검사 시 배기관이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는 경우에 부적합 판정하도록 업무 지시하였음)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Q3-8. 고급택시, 대형택시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대상인지?

A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급택시 및 대형택시 또한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작동 상태 불량 포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3호에서 정하는 부적합 판정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근거〉

- ❖ 「교통안전법」 제55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Q3-9.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고 있는 하차확인장치의 해제 시 스위치가 아닌 key on 으로도 해체가 가능한 경우 검사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4에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시동정지 후 3분 이내에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 작동 시 확인버튼을 누르거나 원동기를 다시 시동하여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기준 개정 이전(2019.3.21.)에 제작된 일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경우 Key on에서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경고음과 표시등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성능확인 되었습니다.

* 2019.3.21. 이전 성능확인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VIMS 자료실 “456.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검사업무 참고자료 게시” 참고

〈관련근거〉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

Q3-10.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설치되는 운행기록계가 GPS 기반일 경우에 부적합 대상인지?

A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별표1 ‘운행기록 장치의 세부기준’에서 차속은 0.01초 이하 단위로 순간속도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GPS를 통한 차량 속도 검출은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운행기록장치의 설치상태 불량은 부적합 대상입니다.

Q3-11.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가 기능교육용 또는 주행시험용 표지등을 설치하고 온 경우에 부적합 대상인지?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7 및 별표31에서 주행시험용 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는 상단에 표지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가 **주행시험용 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단에 표지등이 설치되어있더라도 부적합 판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택시의 택시표시등과 같은 개념으로 판단)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7 및 별표31

Q3-12.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된 등록번호판이 중앙이 아닌 좌측 끝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 부적합 대상인지?

A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에서 정하는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에서는 등록번호판을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함.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적합 항목에는 번호판의 설치위치와 관련한 내

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시정권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번호판이 차체의 너비보다 돌출되어 너비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거나 변경된 번호판 설치위치에 번호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인증받지 아니한 번호등을 임의로 설치한 경우 등은 부적합 판정대상입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4장

검사방법

Q4-1. 주차브레이크 검사 시 바퀴가 롤러를 벗어나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바퀴에 고임목을 대고 주차브레이크를 검사하면 제동력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확한 주차브레이크 검사방법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서 정하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서는 제동장치의 검사와 관련하여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에 대한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제동력 측정 시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 제동장치만을 작동시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4-2. 원바디가 설치된 화물자동차 검사 시 하대 제원은 어떻게 측정하는게 맞는지?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2에서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원바디 자동차의 하대제원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지시 하였으며 현재 원바디 자동차의 하대길이는 탑 뒷문까지, 하대높이는 바닥부터 천정까지 측정하고 있습니다.

- 하대길이 : 튜닝검사 시 탑 뒷문까지 측정(15.1.23.부터)
- 하대높이 : 튜닝검사 시 바닥부터 천정까지 측정(19.4.1.부터, 18.7.9.~19.3.31.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 자동차는 천정 혹은 기둥 모두 인정)

Q4-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

Q4-4.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된 상용자동차가 전자장치진단기 통신 불량 발생 시 속도제한장치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A 최고속도제한장치에 대한 전자장치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속도계시험기 등을 활용하여 주행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장치진단기 또는 주행검사를 통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운행 시 처벌대상임을 안내하고 적합 판정이 가능합니다.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또는 조작으로 단속된 자동차의 임시검사 시에는 전자장치진단기 또는 주행검사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정비명세서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있음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Q4-5. 전후륜 브레이크 제동력 검사 시 서서히 밟으면 좌우 편차가 크지만 세게 밟으면 좌우 편차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세게 밟아 검사를 하면 적합한 검사인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서 정하고 있는 제동장치의 검사방법에서는 제동력 검사 시 페달을 어느 정도로 밟으라는 내용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제동력 검사 시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아 검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Q4-6.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력 검사 시 정확한 검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과정에서 측정하는 제동력은 후축의 제동력에 해당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각 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중의 20% 이상, 동일차축의 좌·우 차바퀴 제동력의 차이는 해당 축중의 8% 이내 및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중량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후축 제동력만 검사할 수 없는 검사장비의 경우에는 견인하는 차의 앞바퀴를 전륜으로 검사하고, 후륜은 피견인자동차로 검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제5장

기타

Q5-1. 종합검사와 이륜차 정기검사를 동시에 지정받은 업체에서 종합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륜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지?

A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받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검사업무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는 별개의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Q5-2. 빔스(VIMS)에 당일 검사자 관리를 입력해야 되는 법적근거는?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및 제80조의2에서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확인한 검사결과를 자동차검사 표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검사표에는 검사를 시행한 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신청인에게 자동차정기검사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빔스(VIMS)에 당일 검사자를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Q5-3. 검사시행일 이후에 검사한 자동차의 검사결과 오입력이 확인된 경우에 검사판정 삭제 등 처리방법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확인한 검사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을 하면 해당 검사는 종료됨에 따라, 검사시행일 이후에 검사한 자동차의 검사결과 오입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삭제 등의 처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검사 시 철저한 검사 시행 및 판정을 통하여 검사결과와 다르게 결과가 전송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5. 자동차검사 시 제공할 수 있는 정비서비스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A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검사 도중 전조등 조정 등 간단한 조정으로 교정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를 제외한 부적합사항을 정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 화 장 치

제1장

일반기준

Q1-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이야기하는 백색, 황색의 정확한 의미가 애매한데 자동차검사 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A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자동차 등화장치의 색상은 색도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어, 육안으로 등화의 색상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동차검사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등화장치 광원(전구)이 자동차용 부품으로 인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Q1-2. 검사영상 촬영 시 주간주행등을 켜 놓은 상태에서 촬영해도 되는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제2항에서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촬영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간주행등을 켜 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

Q1-3.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옆면표시등을 두 줄로 설치가 가능한지?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옆면표시등의 설치기준에서 높이, 길이방향에 대한 설치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개수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위치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옆면표시등을 길이방향으로 3등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한 줄로 설치를 할 경우를 가정하여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 줄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의2

Q1-4. 서치라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지?

A 튜닝관련 규정에서 서치라이트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찰용·소방용·긴급전기보수차량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4조

Q1-5. 제동등 미점등에 대한 부적합코드를 이용하여 제동등이 일부 미점등되는 경우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지?

A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등화장치의 일부 미점등과 관련하여 “최초 형식승인을 기준으로 한쪽 등화가 완전 미점등이면 부적합 처리, 일부만 미점등인 경우에는 시정권고로 처리” 하도록 판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판정코드 입력 시 ‘후미등 점등작동 상태’ 또는 ‘제동등 점등작동 상태’에 관한 부적합코드를 사용하여 시정권고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Q1-6. 화물차가 반사띠를 설치하는 경우 부적합 대상인지?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반사띠 의무 설치대상* 이외에도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반사띠 색상기준은 앞면은 백색, 옆면은 황색 또는 백색, 뒷면은 황색 또는 적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사띠 설치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2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반사띠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부적합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시정권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 자동차의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옆면에, 너비가 2.1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뒷면

〈관련근거〉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Q1-7. 자동차에 설치하고 있는 측면 보조방향지시등 개수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서 방향지시등은 **앞면·뒷면 및 옆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는 앞·뒷면에 대해서만 방향지시등을 좌·우 각 1개씩 설치하도록 정하였고 보조방향지시등의 설치개수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2장

안전기준 및 불법등화

Q2-1. LED 전조등 및 등화장치가 인증된 제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A 제작자동차에 설치된 등화장치는 제작사별 고유 식별부호 또는 부품자기인증표시 ‘KC-Mark’ 등을 표기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확인가능하며,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협회로고 및 인증번호(관리번호)를 확인하되, 필요시 자동차등록증 상 인증표시(스티커)와 한국자동차 튜닝협회 홈페이지(<http://cartuning.kr/>)의 인증부품장착 조회에서 장착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2]

Q2-2. 자동차에 기존 후퇴등 광원을 LED 광원으로 교체한 경우에 부적합 대상인지?

- A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와 튜닝인증부품을 경미한 구조·장치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교체된 LED가 이에 해당되는 등화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교체한 광원이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Q2-3. 중·대형화물차 중간 또는 후미에 부착된 LED 등화장치가 차량 측면 및 후미로 돌출되지 않고 빛이 지면으로 향하게 설치된 경우에 검사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에서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를 부적합 판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화장치의 돌출 또는 조사 방향과 관계없이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 대상이 됩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

Q2-4. 대형화물차 후단 측면에 설치하고 있는 끝단표시등(일명 토끼등(뿔등))이 뒷면 방향은 점등되지 않고, 전면 방향만 점등되는 경우에도 부적합인지?

A 끝단표시등의 점등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된 끝단표시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서 해당되어 부적합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Q2-5. 안개등 전구 색상이 파란색이나, 등광색이 흰색인 경우 E1 마크를 확인하고 있는데, 해당 안개등이 미점등된 상태에서 전구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선명한 경우에도 적합으로 처리하는지?

A 코팅된 전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인증(자기인증 또는 튜닝인증부품)여부(E-Mark 포함)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의21]에 규정된 전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에 해당하여 부적합 판정**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의21]

Q2-6. 인증받은 안개등에 황색 필름을 부착하여 안개등 점등 시 황색을 나타는 경우에 검사 판정 방법은?

A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등화장치의 렌즈(커버)에 색상이 있는 필름을 부착하는 행위는 등화장치의 광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개·변조에 해당하여 **부적합 판정 대상**이 됩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Q2-7. 할로젠 타입의 전조등을 LED순정 전조등으로 교체한 경우에도 부적합 대상인지?

A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이 되어 설치하는 등화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사가 자기인증한 자동차의 부품으로 전조등 교체는 가능하나, 별도의 개·변조 없이 관련 부품을 일체(광축 조절장치를 포함)로 교체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

Q2-8. 미인증 등화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인증 등화가 점등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적합대상인지?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에서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를 부적합 판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등여부와 관계없이 미인증 또는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가 설치된 경우 부적합 판정 대상이 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Q2-9. 제작당시 설치되어 있던 번호등을 제거하고 LED바 형태의 번호등으로 교체 설치한 경우에 검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A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LED 번호등을 경미한 구조·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렌즈(커버) 등의 개·변조 없이 광원만 단순 교체하는 경우로, 기존의 번호등 일체를 제거하고 LED바 형태의 번호등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또는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해당하여 부적합 판정해야 합니다.

Q2-10. 유럽에서 인증받은 반사띠를 국내자동차에 설치한 경우에도 부적합 대상인지?

- A 반사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에 해당되는 자동차부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KC-Mark)된 반사띠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반사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적합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유럽인증 반사띠 부착으로 부적합 판정은 불가하며, 시정권고 판정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Q2-11. 캠핑용 트레일러에 후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후퇴등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0.75톤 이하인 경우에는 후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나 0.7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퇴등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Q2-12. 안개등이 미 장착된 자동차가 출고된 후 안개등을 설치하여 미등과 연동되는 경우에 검사 판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시에 비교에서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의6]에서 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호 라목에서 안개등은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과 연동된 안개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에 해당하여 부적합 판정 대상이 됩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의6]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

Q2-13. 제작당시 단구형 경광등이 설치한 자동차에 경광등을 추가 설치한 경우에 검사판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경광등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튜닝 승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작당시 단구형 경광등이 설치된 자동차에 경광등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도 튜닝승인을 받아야하며 임의로 설치한 경우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해당하여 **부적합 판정**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80조

제3장

작업등

Q3-1.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작업등도 인증등화를 사용해야 하는지?

A 작업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2019.12.31. 이후는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일 것’), 등광색은 백색일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규정하고 있는 작동 조건 및 등광색만 적합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Q3-2. 화물자동차의 작업등이 여러 개를 설치하여도 검사가 가능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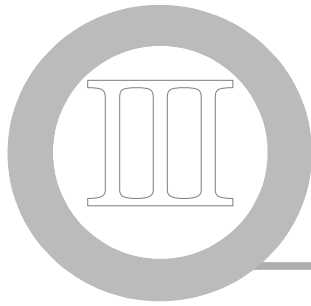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작업등의 작동조건 및 등광색만을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작동조건 및 등광색을 만족하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Q3-3. 측면, 후면에 설치하는 작업등에 대한 연식별 부적합 기준과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작업등의 작동조건 및 등광색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동조건의 경우에는 2019.12.31. 이전 자동차는 ‘운행 전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을 적용하며, 2019.12.31. 이후 제작·조립·수입된 자동차는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일 것’ 적용하고 있습니다.

Q3-4. 트랙터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등의 경우 시속 20km 이상에서 소등되어야 하는데 제작당시 설치된 자동차가 소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동으로 소등이 되면 적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A 2019.12.31. 이후 제작·조립·수입된 자동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일 것’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에 해당되어 부적합 대상입니다.



배출가스 검사

Q1-1. 종합검사 대상인 총중량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가 특수장치 설치 등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무부하검사방법로 하는 경우에 대형동력계가 설치되지 않은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가 가능한지?

A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 “총중량이 5.5톤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려면 소형 차대동력계를,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를 각각 갖추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대형동력계가 설치되지 않은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가 총중량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무부하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Q1-2. 종합검사 배출면제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가 가능한지?

A 주제어장치와의 실시간 통신 등 종합검사 시설기준 중 안전도 검사와 관능검사처리를 위한 검사장비 등의 요건(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2.검사장비 등 참조)을 갖춘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 배출면제 자동차에 대해 검사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의 검사업무 범위는 준수하여야 함.

Q1-3. 경유차 부하검사에서 중형화물, 특수자동차 중 일반형에서 특수용도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는 엔진제어 수 제어 방식(Lug-down3모드)로 검사하는데 특수용도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A 일반형에서 특수용도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대상으로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완료한 자동차로써, 제원관리표의 유형이 특수용도형으로 표기된 자동차를 의미하며, 특수용도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1)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2)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 견인형, 구난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 특수용도형으로 튜닝되어 있으나, 전산(VIMS)에는 일반형으로 입력된 경우에는 튜닝검사를 시행한 검사소에 튜닝내역 경정 요청 후 Lug-down3 모드로 검사 시행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Q1-4. TCS, ESP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설치된 장치의 기능해제를 위해 휴즈를 탈거해야 하는 경우에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방법은?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 부하

검사방법 적용 대상 중 무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할 있는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휴즈 탈거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1) 상시 4륜구동 자동차
- 2) 2행정 원동기 장착자동차
- 3)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가스·알코올사용 자동차
- 4) 소방용 자동차(지휘차, 순찰차 및 구급차를 포함한다)
- 5) 그 밖에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검차장의 출입이나 차대 동력계에서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자동차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6]

Q1-5.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 산소센서 등 부적합 대상 센서 이외에 배출가스와 매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센서(EGR 등)에 대한 결함 경고등이 확인된 경우에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해도 되는지?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6]에서 전자진단장치를 통해서는 흡기량센서, 산소센서, 흡기온도센서, 수온센서, 스로틀 포지션센서와 매연여과장치 관련 부품(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등이 전자진단으로 고장코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임의 탈거, 파손 및 변경 등 이상이 관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대상입니다.

Q1-6. 종합(배출면제) 검사 시 산소센서 등 5대 센서, 저감장치 관련 3대 센서와 관련한 고장코드가 확인된 경우에 검사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A 종합(배출면제)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는 1년 마다 시행)’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해당되는 자동차입니다. 또한, 종합(배출면제)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의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6]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소센서 등 5대 센서와 저감장치 관련 3대 센서와 관련한 고장코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로 처리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1-7. 제작연도와 최초등록연도가 다른 자동차의 종합검사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A 종합검사 적용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령기산일 기준은 다음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이에 제작연도와 최초 등록연도와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차령을 기산하여 종합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Q1-8. 종합검사 시행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능교육용 자동차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종합검사로 시행할 수 있는지?

A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Q1-9. 휘발유, 가스 겸용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시 어떤 연료를 기준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지?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에서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가스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를 기준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Q1-10.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하는지?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5]에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Q1-11. 4륜방식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종합검사 대상인 경우에
검사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6] 제1호 일반 기준(그 밖에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검차장의 출입이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자동차)과 제3호비고3(하이브리드 자동
차의 경우 엔진구동이 되지 않거나 공회전수가 검사 범위를 벗
어나 무부하(공회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부하(공회전)
검사를 면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시 4륜 방식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엔진구동이 되지 않거나 공회전수가 검사 범위를
벗어나 무부하(공회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합검사
(배출면제)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1-12. CNG, LNG와 같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공기과잉률 기준은?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에서 ‘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CNG, LNG와 같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은 희박연소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1-13. 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가 부적합되어 재검사기간이 10일 부여됐는데, 재검사에서 배출가스 관련 관능 불합격(원동기회전상태 불량)으로 처리되면 재검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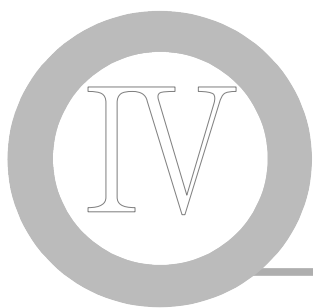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 기준 위배에 따라 부여되는 재검사기간(10일)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다만, 배출가스와 등화장치가 같이 부적합되어 10일이 부여된 경우에 재검사 시 배출가스는 적합이 되고, 등화장치가 부적합이 되었을 때에는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 후 10 이내로 재부여됨

Q1-14. 중형 LPG 그랜드스타렉스의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고속공회전 모드는 승용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소형자동차에 한정하고 적용을 하고 있어, 중형자동차인 LPG 그랜드스타렉스는 배출가스 검사 시 저속공회전 모드만 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튜닝 관련

제1장

튜닝대상 및 기준

Q1-1.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생 사용하여 튜닝이 가능한지?

A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교체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장착하고 있으며, 폐차 등의 사유로 탈거를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등에 반납을 의무화하고 있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생 사용하여 튜닝은 불가함. 다만, 제작자동차에 부착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구매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튜닝을 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Q1-2. 승합자동차 자동문 또는 발판을 튜닝절차없이 설치한 경우에 검사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A 2013.12.18.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구조 및 장치’에서 자동문이 제외됨에 따라, 2013.12.18. 이후 등록된 자동차에 자동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튜닝절차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하며, 튜닝절차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승차장치 임의변경으로 부적합대상입니다.

또한 승합차에 설치하는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에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에 해당되어 최외측으로부터 좌, 우 각각 50mm 이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튜닝절차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자동차 검사도 가능함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 경미한 구조·장치

구분	구조·장치 등
길이·너비 및 높이	너비 :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 이내)

Q1-3. 내장탑 등을 설치한 화물차에 승하차용 후부 발판을 설치한 경우 검사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A 내장탑에 설치하는 승하차용 보조발판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3]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튜닝절차없이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자동차검사가 가능합니다.

Q1-4.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보강으로 인하여 차량총중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대상인지?

A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이 변경되는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튜닝승인 대상(이하 “튜닝승인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튜닝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적재함 보강으로 차량

총중량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3]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대상임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Q1-5. 자동차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서스펜션이 설치된 경우
에 검사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 A** 완충장치의 변경은 튜닝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에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서스펜션을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에어서스펜션을 높인 상태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최저지상고에 관한 기준(10cm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에어서스펜션을 작동시킨 상태(최저 및 최고점)에서 **차체의 높이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3] ‘제원의 허용차’ 이내 이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정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Q1-6. 자동차의 좌석을 리무진 시트로 변경한 경우에 부적합 대상 인지?

A 자동차의 좌석의 골격과 레일 등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트커버, 내장제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차장치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튜닝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함. 다만, **좌석의 골격과 레일 등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튜닝대상에 해당되며, 튜닝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합 대상임**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Q1-7.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튜닝으로 인해 배선을 개조한 경우에 검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A 전기장치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변경만 튜닝대상에 포함이 되며, 등화장치 설치 또는 튜닝을 위해 배선을 개조하는 것은 **튜닝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선의 개조상태 등이 불량하여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제6호에 따라 부적합 대상입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Q1-8. 워크스루밴의 적재공간에 미닫이식 창유리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부적합 대상인지?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성능의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 또는 차체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워크스루밴의 적재공간에 미닫이식 창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대상**입니다.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Q1-9. 소형화물차 또는 승합자동차 상부에 확성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부적합 대상인지?

A 소형화물차 또는 승합자동차 상부에 확성기를 볼트, 용접 등으로 고정하여 설치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3]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되며, **튜닝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합 대상**임

* 소음 발생 등의 사유로 튜닝승인은 제한하고 있음. 다만, 긴급자동차 지정을 받은 차량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튜닝 가능

Q1-11. 하대가 없는 구난자동차의 제원표에 최대 적재량이 500kg으로 기재된 경우에 적재함을 설치해도 되는지?

A 특수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제원표에 최대적재량이 별도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적재함 설치하는 불가하며, 설치된 경우 부적합 대상(자기인증 당시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는 제외)임. 다만, 최대적재량 부여되어 있고, 하대높이가 있는 경우에 공구함 설치하는 가능함

Q1-12. 충격완화장치 설치 튜닝한 고속도로 작업 차량의 검사 시 충격완화장치를 탈거하고 왔을 경우 검사가 가능한지?

A 도로의 보수·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충격완화장치 또는 모래살포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에 따라 튜닝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충격완화장치 설치 튜닝을 한 자동차가 탈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검사 시행이 가능함

Q1-13. 활어운반차의 산소기포발생장치가 운전석 위(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가 해당 사항에 대하여 튜닝을 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가능한지?

A 산소기포발생장치 설치로 인하여 차체의 높이 등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3]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되며, 튜닝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에는 부적합 대상임

Q1-14. 자동차 후면에 튜닝 절차없이 사다리를 설치한 경우 검사가 가능한지?

- A 자동차 후면에 사다리 설치하는 튜닝절차 없이 가능(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않는 경우에 한함)하나, 사다리 설치로 인하여 차체의 길이 등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3]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되며, 튜닝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에는 부적합 대상입니다.

Q1-15. 카니발과 같이 좌석 탈거가 볼트 등 체결장치 제거없이 가능토록 제작된 자동차가 좌석을 탈거한 상태로 검사를 신청한 경우 처리방법은?

- A 자동차의 좌석 제거 및 추가설치 등 승차장치 변경은 볼트 등 체결방법과 관계없이 튜닝승인 대상이 되며, 튜닝절차 없이 좌석을 임의로 제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부적합 대상입니다.

제2장

경미한 튜닝

Q2-1. 코란도밴, 스타렉스 밴과 같은 밴형 화물자동차에 루프캐리어, 루프탑텐트 등이 설치된 경우에 검사가 가능한지?

A 루프캐리어 및 루프탑텐트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별표1]에 따른 경미한 구조·장치(이하 “경미한 구조·장치”라 한다)에 해당되어 **튜닝 절차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승용·승합자동차의 차체와 유사한 코란도 밴, 스타렉스 밴에 설치 시에도 튜닝 절차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장탑, 원바디 등과 같은 물품적재장치에는 제외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

구분	구조·장치 등
길이·너비 및 높이	높이 : 포장탑(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 300mm까지), 포장보관대, 루프캐리어, 수하물 운반구(천정절개형 제외), 차체 상부에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안테나, 컨버터블탑용 롤바, 유리지지대(최대적재량 1톤이하),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태양전지판

Q2-2. 픽업차량에 포장탑 설치 시 경미한 튜닝으로 볼 수 있는지?

- A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포장탑을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되어 튜닝절차없이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픽업차량에 포장탑을 설치한 경우에 자동차검사는 가능함

〈관련근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 경미한 구조·장치

Q2-3. 캠핑트레일러 상부에 튜닝 절차없이 루프캐리어를 설치한 경우 검사가 가능한지?

- A 캠핑트레일러 상부에 루프캐리어 또는 루프탑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이 되어 튜닝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루프캐리어 또는 루프탑텐트의 설치를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는 사항은 차체의 높이 변경이 발생하여 튜닝절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튜닝승인 절차없이 지지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적합 대상입니다.

Q2-4. 튜닝없이 순정 듀얼머플러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차종으로만 제한하는지?

A 자기인증한 소음방지장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되어 **차종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나, 다른 차종의 소음방지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음덮개 등 차체의 손상이 없는 경우에만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가변밸브와 일체형으로 자기인증 소음방지장치는 튜닝승인 절차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

구분	구조·장치 등
소음방지장치	- 배기관 팁(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소음방지장치

Q2-5. 최대적재량이 0kg인 특수자동차에 공구함을 설치한 경우에 부적합 대상인지?

A 공구함은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되어 튜닝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 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최대적재량이 0kg인 특수자동차에 공구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초과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 공구함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관련근거〉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

구분	구조·장치 등
차체 및 차대	•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웬더스커트, 후드/윈도우 프렉터, 후드스쿠프, 선바이저, 범퍼가드, 그릴가드, 웬더커버, 썬루프,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u>공구함 (공구함의 크기는 하대길이의 2분의1 이내 및 하대 높이의 2배 이내)</u>, 블랙박스작동표시등, 화물탑차 스커트,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보조유압잭, 농약살포용 분무기 •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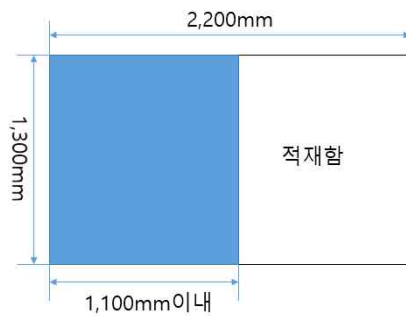
* 비고 :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길이, 너비 및 높이로 구분된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3] ‘제원의 허용차’ 미적용)

Q2-7. 픽업트럭 적재함에 롤바 설치 후 그 위에 루프탑 텐트를 설치한 경우 검사가 가능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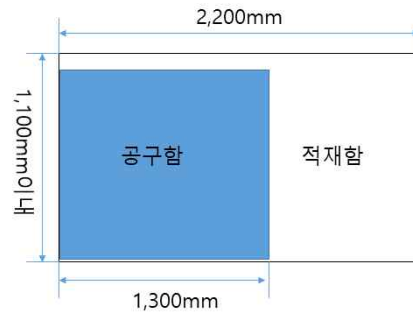
A 레저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루프탑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되어 튜닝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검사 시에는 적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내장탑, 윈바디 등과 같은 화물을 운송하는 물품적재장치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2-8. 소형화물자동차에 공구함 설치 시 하대길이의 1/2, 하대높이의 2배이내인 경우 경미한 튜닝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공구함이 하대 면적의 1/2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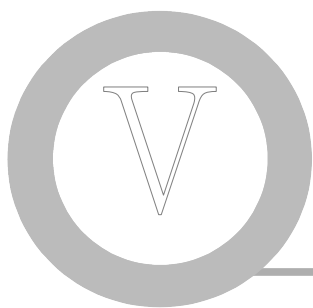
A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9.10.14.)에 따라 경미한 구조·장치로서 튜닝 승인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구함은 하대길이의 2분의1 이내 및 하대높이의 2배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적합하면 설치 방향과 무관하게 자동차검사 시 적합으로 처리 가능하나,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대 면적의 2분의 1 이내라도 튜닝절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길이방향 설치>



<너비방향 설치>



기 타

제1장

택시미터 사용검정

Q1-1. 택시미터기에 설치된 봉인의 개수가 상이한데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A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1차 봉인한 후 그 봉인선을 이용하여 차체와 연결하여 2차 봉인을 실시하고, 택시미터의 좌·우 2개소에 택시미터와 차체를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봉인, 따라서 봉인은 총 4개이어야 함



〈관련근거〉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택시미터의 봉인 등)

Q1-2. 구급차에 설치된 요금미터장치의 검사는 매 검사 시마다 실시해야 하는지?

- A 네 맞습니다. 이미 부착된 요금미터장치는 구급차 정기(종합) 검사나 임시검사 시에 ‘사용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6의2

1. 구급차 기본 장착 장비 기준

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택시요금미터”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로, “택시요금체계”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요금체계”로 보되, 검정에 관한 사항은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

Q1-3. 모든 구급차가 요금미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구급차 운전자 중 다음의 대상이 운용하는 구급차에는 반드시 요금미터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미 장착이 가능함

- 1) 의료기관(제2호)
- 2)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제4호)
- 3) 응급환자 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제5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급차도 설치 제외 대상임

Q1-4. 택시미터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택시가 택시미터기를 설치한 경우에 사용검정을 시행해야 하는지?

A 대형 및 고급택시는 미터기의 설치의무는 없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에서 택시미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택시미터 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요금미터기를 설치한 대형택시에 대해서는 미터기 사용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

Q1-5. 택시미터 사용검정에서 납봉인 설치상태로 부적합 처리할 수 있는지?

A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택시미터 검정기준에서 “봉인은 납(pb)을 제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검정 점검항목 및 검정방법에서 겉모양의 경우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검정에서 납봉인 설치상태로 부적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근거〉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3. 검정종류별 검정항목 및 검정방법

다. 사용 검정	(1) 구조	(가) 겉모양 (나) 표기 및 표시(9)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2) 기차	거리의 허 용차(4.2)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6. 구조

6.6 부인 부분등

6.6.2 조정장치는 봉인을 파손시키지 않는 한, 변화나 개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봉인은 납(pb)을 제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Q1-6. 교통약자전용택시에 설치된 택시미터도 사용검정을 해야 하는지?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택시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는 해당법령에 요금미터 설치 및 검정에 관한 근거가 있으나, 교통약자전용택시에 대한 설치 근거 등 해당법령에서 사용검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용검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제2장

이륜차 정기검사

Q2-1. 이륜차 정기검사 시 경음기 추가가 확인된 경우 검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A 경음기를 단순 교체한 경우에는 소음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검사가 가능하나, 경음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대상임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Q2-2.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륜자동차가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검사가 가능한지?

A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검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와 달리 임시검사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